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5-122호

「우편법 시행령」 제12조, 「국제우편규정」 제9조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1조2에 따른 「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(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4-19호)」에 따라 국제선편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2. 3.

우정사업본부장

1. 개요

「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4-19호, 2024.3.29.)」 상 국제선편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에 대해 국가별 적용 수수료를 조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국제우편물 운송 추진

2. 운영 내용

가. 적용 우편물 : 국제선편소포

나. 변경 수수료 적용일 : '25. 12. 11.(목)부터

3. 문의: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(044-200-8288)

부 칙

이 공고는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붙임

국가별 국제선편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 (12.11.시행)

<국가명 : 한글자음순>

국가명	적용 수수료		적용대상
	1kg당	100g당	
미국	100원	10원	국제선편소포